



주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보 부정취득에 관한 부정 경쟁행위금지등 청구사건

4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 번호	평정20년(와) 제16126호
판결 일자	2009. 11. 27.	판결 결과	
원고	주식회사 일본크리드		
피고	주식회사 Y, A, B, C, D, E, F, G, H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8호, 4조, 민법 719조		
영업 비밀	특별주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취득		

02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송 외 DST는 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F가 이사로 있다. 피고 F는 주식회사 어번포스를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을 병행하였으며, 피고회사와 업무를 제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Y는 부동산의 매매, 중개,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 B, C, D는 DST에서 원고로 파견근무를 나간 자이며, 피고 E는 원고의 종업원이다. 또한 피고 F는 DST의 이사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권유하여 이들을 DST에서 원고로 파견하게 하였다.

본 사안의 대상이 되는 특별주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소유자 정보를 중심으로 35만 건 이상의 원룸맨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회사 및 피고 개인들이 공동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등의 부정행위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 공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원룸의 소유자는 전국각지에 점재해있어 그 정보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유용한 영업 비밀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하다.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정보 등은 열람 취득하면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영업 비밀이 아니다.

피고 회사 설립 3개월 만에 60만 건의 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과 서식의 형태 유사성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정보를 부정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당 정보는 외주를 통해 3개월이면 충분히 입수 가능한 정도의 정보이다. 또한 피고회사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

04 판결 요지

본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패스워드에 의한 액세스 제한이 없다고 하나, 영업부 직원은 자신의 몫으로 인쇄된 것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비밀로 관리하는 실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본 정보는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지성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해당 정보의 부정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를 피고들이 종이매체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전자데이터로의 취득에 대해서도 원고의 회사가 다운로드의 기능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당하게 접근한 점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취득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를 향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05 Key Point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영업비밀이 성립되어야 부당취득을 논할 실익이 있다.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하였다는 사실은 주관적인 믿음보다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주장가능하다.
